

서 주로 할 것이 많은데 老人, 우리 市 保社局內에 老人課, 그런데 그것이 그 前부터 계속 말이 있었는데 그것 아직 新設 안 하는 理由는 局長님이 의욕이 없으십니까? 경고 한번 받으셔야지 일을 하시렵니까?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그 局 關係課, 老人 福祉課 얘기죠? 老人福祉課, 그것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年齡層이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老人福祉年金 같은 것도 지금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建議를 해서 保社部에서 老人福祉課, 老人問題만 專擔하는 그런 課 單位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家庭福祉局하고 같이 議論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金鍾源委員長,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金鍾源委員 金鍾源입니다. 墓地問題는 지금 좁은 國土에서 앞으로 계속 使用해야 되는 그런 問題 때문에 상당히 重要性을 要하는 問題라서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한 質疑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市立墓地條例는 어떻게 보면 우리 庶民들한테 상당한 負擔을 주는 그런 條項이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15年 以後에는 다시 또 申告를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운 節次도 있고 또 3年마다 申告해서 使用料를 내야 되는 그런 負擔을 주는 條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執行部에서 1年 동안 檢討를 해서 충분한 資料를 提示해 주셨고, 또 오늘 오랫동안 質疑 應答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미진한 部分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미진한 部分은 施行細則을 충분히 檢討해서서 이로 인해서 被害를 보는 우리 市民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나 아까 우리 社會課長님 말씀하셨습니다만 新聞에 대대적인 公告를 해서 몰라서 被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資料를 보게 되면 引上率

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것은 引上했던 期間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隣近의 다른 地域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額數가 아닌 것 같아서 執行部에서 提出하신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勸諭합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林承后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林承后委員 第7條 使用期間에서 “使用期間을 延長하고자 할 때는 使用期間이 끝날 날로부터 1年 以內에 다시 使用許可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로 인해서 1年으로 해서 民願의 發生素地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은 2年 以內로 이렇게 修正할 것을 提案합니다.

○委員長 車奉五 좋습니다. 第7條第2項 使用期間 1年을 갖다 2年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調整해서 이렇게 받자는 修正인데 同意해 주셔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同意해 주셔도 충분히 理解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관참됐죠?

(「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勸諭를 받아들이나니까 1年을 第7條 第2項에 1年 使用을 2年으로 이렇게 修正해서 받자는 勸諭에 再請이 있습니다. 異議 없으시면 以上으로 質疑와 答辯을 全部 마치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公設墓地, 公設火葬場의 管理및 使用條例改正條例案을 1年을 2年으로 修正해서 通過시키려고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公設墓地, 公設火葬場의 管理및 使用條例改正條例案을 通過한 것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공설묘지, 공설화장장의관리및 사용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설묘지, 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

<p>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 장묘시설의 설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묘시설”이라 함은 조성묘지, 비조성묘지, 납골묘지(이하“묘지”라 한다) 화장장 및 납골당 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조성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비조성묘지”라 함은 시립묘지중 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4. “납골묘지”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5. “적출물”이라 함은 신체로 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장기·사태아·태반 및 수족 등을 말한다. <p>제3조 (명칭등) ①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이하 “장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등은 별표1과 같다.</p> <p>②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 (사용허가)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 (사용면적) 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성묘지(납골묘지를 포함한다) : 6.6제곱미터 2. 비조성묘지 : 6.6제곱미터 이상 19.8제곱미터 이내 <p>제6조 (사용료등) ①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은</p>	<p>별표2와 같다. 단, 조성묘지 분묘관리비는 매 3년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애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p>제7조 (사용기간) ①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p> <p>②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8조 (사용권의소멸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묘지나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내에 신고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9조 (사용권의양도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p>
--	--

소 할 수 있다.

-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조성묘지의 분묘관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 11 조 (수거및개장명령) ①시장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16조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12 조 (사용자의신고의무)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 13 조 (분묘의구조등) ①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묘비를 세우고 시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분묘의관리책임) 시립묘지내 분묘의 관리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성묘지 : 시장
- 2. 비조성묘지 : 사용자

제 15 조 (원상회복및실비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장묘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 16 조 (납골당유골안치기간및처리) ① 납골당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시립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 17 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장, 납골당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8 조 (운영지원)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 (수탁자의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등을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p>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p> <p>제 21 조 (위탁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 22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 . . .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본묘는 이 조례 시행이후 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일제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p> <p>제 3 조 (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 4 조 (사용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조성묘지(종전규정에서 공원묘지)의 분묘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5 조 (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p> <p>〈별표 1〉 장묘시설의 명칭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명 칭</th> <th>관리소 소재지</th> <th>관 장 사 함</th> </tr> <tr> <td>장묘사업소</td> <td>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산178-1</td> <td>장묘시설 총괄 운영, 사업소내 시설운영</td> </tr> <tr> <td>망우리 묘지</td> <td>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15</td> <td>망우리묘지내 시설운영</td> </tr> <tr> <td>내곡리묘지</td> <td>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내곡리 산99</td> <td>내곡리묘지내 시설운영</td> </tr> <tr> <td>벽제리묘지</td> <td>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산4-1</td> <td>벽제리묘지내 시설운영</td> </tr> <tr> <td>용미리 제1묘지 (종전규정의 용미리묘지)</td> <td>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91-1</td> <td>용미리제1묘지내 시설운영</td> </tr> <tr> <td>용미리 제2묘지 (종전규정의 공원묘지)</td> <td>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65-1</td> <td>용미리 제2묘지내 시설운영</td> </tr> </table> <p>〈별표 2〉 장묘시설 사용료등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h>요 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묘 지</td> <td>· 조성묘지(3.3제곱미터당)</td> <td>140,000</td> </tr> <tr> <td>· 비조성묘지(")</td> <td>21,900</td> </tr> <tr> <td>· 조성묘지 분묘관리비</td> <td>44,200</td> </tr> <tr> <td rowspan="5">화 장 장</td> <td>· 대인(만 13세 이상) 1구당</td> <td>15,000</td> </tr> <tr> <td>· 소인(만 12세 이하) 1구당</td> <td>12,000</td> </tr> <tr> <td>· 사산아 1구당</td> <td>5,000</td> </tr> <tr> <td>· 개장유골 1구당</td> <td>7,000</td> </tr> <tr> <td>· 적출물 10kg당</td> <td>8,000</td> </tr> <tr> <td rowspan="2">납 골</td> <td>· 1구당(15년사용)</td> <td>15,000</td> </tr> <tr> <td>· " (10년사용)</td> <td>10,000</td> </tr> </tbody> </table> <p>○委員長 車奉五 수고하셨습니다. 保社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p> <p>2. 1992年度社會福祉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p>	명 칭	관리소 소재지	관 장 사 함	장묘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산178-1	장묘시설 총괄 운영, 사업소내 시설운영	망우리 묘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15	망우리묘지내 시설운영	내곡리묘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내곡리 산99	내곡리묘지내 시설운영	벽제리묘지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산4-1	벽제리묘지내 시설운영	용미리 제1묘지 (종전규정의 용미리묘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91-1	용미리제1묘지내 시설운영	용미리 제2묘지 (종전규정의 공원묘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65-1	용미리 제2묘지내 시설운영	구 분	내 용	요 금	묘 지	· 조성묘지(3.3제곱미터당)	140,000	· 비조성묘지(")	21,900	· 조성묘지 분묘관리비	44,200	화 장 장	· 대인(만 13세 이상) 1구당	15,000	· 소인(만 12세 이하) 1구당	12,000	· 사산아 1구당	5,000	· 개장유골 1구당	7,000	· 적출물 10kg당	8,000	납 골	· 1구당(15년사용)	15,000	· " (10년사용)	10,000
명 칭	관리소 소재지	관 장 사 함																																														
장묘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산178-1	장묘시설 총괄 운영, 사업소내 시설운영																																														
망우리 묘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15	망우리묘지내 시설운영																																														
내곡리묘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내곡리 산99	내곡리묘지내 시설운영																																														
벽제리묘지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산4-1	벽제리묘지내 시설운영																																														
용미리 제1묘지 (종전규정의 용미리묘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91-1	용미리제1묘지내 시설운영																																														
용미리 제2묘지 (종전규정의 공원묘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65-1	용미리 제2묘지내 시설운영																																														
구 분	내 용	요 금																																														
묘 지	· 조성묘지(3.3제곱미터당)	140,000																																														
	· 비조성묘지(")	21,900																																														
	· 조성묘지 분묘관리비	44,200																																														
화 장 장	· 대인(만 13세 이상) 1구당	15,000																																														
	· 소인(만 12세 이하) 1구당	12,000																																														
	· 사산아 1구당	5,000																																														
	· 개장유골 1구당	7,000																																														
	· 적출물 10kg당	8,000																																														
납 골	· 1구당(15년사용)	15,000																																														
	· " (10년사용)	10,000																																														